

# 검 토 보 고 서

( 2016. 3. 3.)

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 
전문위원 김 건 재

#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

##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

### 1. 안 건 명

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### 2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6-19호

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2일

라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6일

### 3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「장애아동 및 지역주민에게 의료재활·직업재활·교육·체육·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「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」 운영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1) 민간위탁의 목적

-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매입하여 우리구와 재단 법인 푸르메가 민간투자방식으로 건립 추진한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이 2015. 12. 30. 준공됨에 따라,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 위탁이 요구됨.
- 본 사업시설(어린이재활병원, 장애인체육시설, 장애인직업재활 시설, 어린이도서관)의 민간 위탁을 통해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 하며, 장애인의 특성과 복지·의료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음.
- 따라서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「어린이 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」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.

### 2) 민간위탁의 내용

#### - 시설현황

- 위 치 :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(상암동 1738)
- 면 적 : 3,212.9㎡
- 규 모 : 지하3층 지상7층, 연면적 18,571.52㎡
- 사업기간 : 2010. 12. ~ 2016. 12. (2015.12.30. 준공)

- 주요시설 : 어린이재활병원, 장애인체육시설, 장애인직업재활 시설, 어린이도서관
- 민간위탁 범위 :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
- 위탁기간 : 위탁체결일로부터 3년
- 「공유재산법」 제21조에 의거 사업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으로, 푸르메재단에서 최장 20년 무상사용함(위탁계약은 무상사용·허가기간 범위내에서 자동 연장)
- ※ 2014.1.29. : 재단법인 푸르메와 「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·운영」 실시협약 체결

### 3) 추진일정

- 민간위탁 동의(안) 제출 : 2016. 2월중
- 위탁계약 체결 : 2016. 3월
- 물품구입 및 운영준비 : 2016. 3~4월
-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개관식 : 2016. 4월말 예정

4) 소요예산 : 1,343백만원(시비 952백만원, 구비 391백만원)

### 5) 관계법령

- 「장애인복지법」 [시행 2016.1.1.] [법률 제3663호, 2015.12.29., 일부개정] 제57조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[시행 2016.2.3.] [법률 제13996호, 2016.2.3., 일부개정] 제34조 등

## 4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장애아동 및 지역주민에게 의료재활·직업재활·교육·체육·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암2지구 내에 건립추진 중인 「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」에 대한 운영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.
  
- 어린이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은 상암택지개발지구내 사회복지시설 용지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마포구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마포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, 민간기관에서 의료재활시설과 고용창출을 위한 직업재활시설,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, 총 사업비는 국·시비, 민간자본 등 포함 465억원, 2016년 운영비보조금은 13억4천3백만원이 되겠음.
  
- 2014년1월 마포구는 재단법인 푸르메와 “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·운영 실시협약”을 체결하였고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에 의거, 본 사업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후 푸르메재단에서 최장 20년 무상사용하게 됨.